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0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임호선 · 윤준병 · 모경중
강준현 · 안도걸 · 문금주
이상식 · 임미애 · 박선원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